2 (제232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1704

제출연월일: 2021. 2. 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준용되지 않아, 도로 통행불편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도로관리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

나.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3 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도로법」 제108조 및 제117조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과태료

다.「도로법 시행령」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2020 도로점용 질의·회신 사례집

4.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자료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058(2021. 1. 18)]
- 라. 입법예고: 2021. 1. 11. ~ 2. 1.(21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2.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물건 등"이란 간판, 상품진열 등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말한다.
- 제3조(과태료)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 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징수)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구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3. 세부 부과기준

-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 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232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하지 않음

3. 작성자

○ 소 속: 건설과

○ 직 급: 행정8급

○ 이 름: 조배훈

○ 연락처: 052)290-3813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u>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 4. "생략"
-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 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하다)
- 6. ~ 9. "생략"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 4. 지방도
- 5. 시도
- 6. 군도
- 7. 구도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u>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

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제117조(과태료)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 시 적치한 자
-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③ ~ ⑥ "생략"

□ 도로법 시행령

- 제99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1.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u> 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
-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3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 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 합하여 계산한다.
-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 2회 위 3회 위반 반 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법 제117조	제3호에 따른 금액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제2항제1호	7110X11 ME ET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 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세부 부과기준

-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 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2 (제232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2. "생략"
- 13. <u>"공공시설"이란 도로</u>·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2020 도로젂용 질의·회신 사례집

2020 도로점용 질의·회신 사례집

사례 36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과태료부과 관련 질의(2018.11.07, 00군 질의)

✓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에서는 「도로법」제117조(과 태료)를 명시적으로 준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도로법」 제108조에서는 「도로법」 제61 조(도로의 점용하가)를 준용하고 있고, 「도로법」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법」 제108조에서 과태료 부과를 직접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법」제61조가 준용되는 결과로 「도로법」제117조(과태료)도 간접적 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에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로법」 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 회신

- 1. 「도로법」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제117조(과태료)는 적용이 불가함.
- 2. 다만, 「국토계획법」제43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 치법」제27조에서는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 도시·군계획 시설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가능하므로 법률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사항(제117조)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 또한 「도로법」제117조제2항 후문에서는 (준용도로 아닌 「도로법」상)도로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도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 (3)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제1호)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제2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도로법」상 도로 및 도시계획 준용도로 양자를 모두 규정하는 것이 가능.

√ 관련 법령

「도로법」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17조(과태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방자치법」제27조(조례위 반에 대한 과태료)